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57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3년 2월 24일
제 안 자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유사 공공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가 공익광고에 한정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광고게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버스 표판매대(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하여)의 광고 게재를 허용하되 공익광고에 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 제10조제2호부터 제6호를 현행과 같이 하고 현행 제1호의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 (공익광고에 한정한다)”에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 표판매대(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하여 공익광고에 한정한다)”를 추가한다 (안 제10조제1항제1호 수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2호부터 제6호는 현행과
같이 한다.

- ① 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
익광고에 한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
판매대(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하여 공익광고에
한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p> <p>2. ~ 5. (생략)</p> <p><u><신설></u></p> <p>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한다.)</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휴지통, 벤치, _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하여 공익광고에 한정한다.)</p> <p>2. ~ 5.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
익광고에 한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
매대(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하여 공익광고에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는 현행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u></p> <p>2. ~ 5. (생략)</p> <p>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휴지통, 벤치, <u>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하여 공익광고에 한정한다.)</u></p> <p>2. ~ 5.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